

별정통신사업 등록요령

우리협회는 지난 2월 13일 중소기업회관에서 별정통신사업에 전업코자 하는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「별정통신사업 등록요령 설명회」를 개최했다. 이에 별정통신사업에 대한 동 사업의 등록방법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설명회 자료의 주요내용을 발췌했다.

별정통신사업 개요

별정통신사업의 정의

- 별정통신사업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,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(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)을 의미함

<표 1>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구내의 범위

1. 하나의 건축물
2. 하나의 부지(1인 소유 또는 공유에 한한다)와 그 부지안의 건축물
3. 1인 점유의 2이상의 건축물 및 그 부지
(건축물 상호간의 직선거리가 500미터이내인 경우에 한한다)

4. 기타 상기의 건물과 인접한 건축물 또는 부지로써 정보통신부 장관이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구역

- 별정통신사업이란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법 제19조에 의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함

별정통신사업의 종류

-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는 설비보유 재판매사업, 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, 구내통신사업임
 - 설비보유재판매사업 : 음성재판매사업, 인터넷폰사업, 국제콜백 전화사업
 - 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 : 재과금사업, 호집중사업

－ 구내통신사업

별정통신사업 등록

시행근거

-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에 한하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(법 제19조)

등록 요건

- 별정통신사업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함(시행규칙 제12조의3)
 - － 재정적 요건
 - 설비보유재판매사업 : 납입자본금 30억 이상
 - 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 : 납입자본금 3억 이상
 - 구내통신사업 : 납입자본금 5억 이상
 - － 기술적 능력
 - 기술방식
 - 전기통신설비 및 역무제공방식이 전기통신망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에 적합해야 함
 - 기술인력
 - 설비보유재판매사업 : 통신분야 기술계 자격자 3인 이상, 기능계 자격자 2인 이상
 - 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 : 통신분야 기술계 자격자 1인 이상
 - 구내통신사업 : 통신분야 기술계 자격자 1인 이상, 기능계 자격자 1인 이상

<표 2> 통신분야 자격증 종류(국가기술훈격법 시행령 제2조)

기술계의 기술분야 및 기술분야별 등급		
기술사	기사 1급	기사 2급
전기통신	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유선설비	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유선설비
정보통신	정보통신설비	정보통신설비 사무정보기기 응용
기능계의 기술분야 및 기술분야별 등급		
기능장	기능사 1급	기능사 2급
통신설비	정보기계설비 유선방송설비 무선설비 선로설비	정보기계설비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유선방송설비 무선설비 선로설비

- － 이용자 보호계획
 - 상설 이용자보호기구 설치(1인 이상 전담직원)
 - 이용약관 제정(이용자보호규정 포함)
 - 보증보험 가입(등록시 납입기준자본금 1/5 금액, 사업개시 1년후 이용자수 * 선납비용 * 1/10 금액)
 -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이용자 보호기준 준수
- － 기타사항

*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시 정보통신부 장관이 역무의 제공이나 전기통신사업의 발전을 연구·개발에 필요한 조건(출연금)부과 가능

* 정보통신부 장관은 별정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범죄행위교사, 반국가적 행위, 선량한 풍속,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에 대해 취급을 거부 정지, 제한 조치 요구 가능

- 설비보유재판매사업을 등록한 자가 설비보유재판매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설비보유재판매사업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
-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자며, 신분은 상근임원 또는 직원만 가능함
- 선납비용은 역무제공이전에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하는 설비비, 가입비 및 선납금 등 일체의 비용임
- 구내통신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통신사업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통신망을 구성·운영해야 함(구내통신사업 등록자, 구내에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된 건물·시설물 등의 소유자·임대인의 제3자 대상 구내통신 설비 이용 강요 금지)

- 전기통신기본법, 전기통신사업법, 전과법 또는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의 취소처분,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의 취소처분,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, 이 경우 법인인 때에는 허가취소,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그 대표자

○ 결격사유 적용 특례(법 부칙 제6조)

- 다음 외국인의 경우 별정통신사업의 진입이 제한됨
 -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외국인등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
 -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외국인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49를 초과하는 법인
 - ※ 외국인등은 외국정부, 외국인, 외국인등의 주식소유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, 외국인등이 대주주인 경우 주식 소유비율이 100분의 15인 법인(법 부칙 제6조제3호, 시행령 제3조)

결격사유

○ 사업자(법 제24조)

-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취소처분,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취소처분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폐지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○ 임원

- 금지산자·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전기통신기본법, 전기통신사업법, 전과법 또는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
신청시 구비서류

- 신청서 : 별정통신사업자등록신청서(별지 3호2서식)
- 구비서류(시행규칙 제12조)
 - 사업계획서(별지 제3호3서식)
 - 법인(설립예정법인 포함)의 대표자·이사 및 감사의 호적등본
 - 해당임원이 별정통신사업자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확인요

-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
 - 정관상 사업목적이 전기통신사업 또는 별정통신사업으로 명시여부 확인요
-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소유에 관한 서류
 - 외국인 지분현황, 대주주 명기
-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·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
-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
 - 재직증명서 별도 제출
-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, 이용자보호 기구의 설치현황 및 운영계획서
- 보증보험증서 사본

- 사업개시 예정일 기재
- 역무 제공 구역
 - 국내의 경우 해당지역을, 국제의 경우 해당국가를 기재
(국내 서비스지역이 전국일 경우 전국을, 해외 서비스지역이 전세계일 경우 전세계로 기재)
- 자금조달계획
 - 소요자금액의 경우 사무실, 국사, 설비비용은 임대료 및 기투자비용도 포함해 작성

작성요령

- 별정통신사업자등록신청서
 - 자본금
 -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기재
 -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및 내용
 - 추진할 별정통신사업 종류 기재 및 세부 사업 내용 구체적 기술
 - 사업구역
 - 국내외별로 서비스지역 구체적으로 기재 (국내 서비스지역이 전국일 경우 전국을, 해외 서비스지역이 전세계일 경우 전세계로 기재)
 - 사업용 주요설비의 개요 및 설치장소
 - 교환기등 주요설비·종류 및 주요설치장소 기재
 -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
 - 자격증별(기사, 기능사등) 보유인력 현황 기재
- 별정통신사업 사업계획서
 - 사업개시 예정년월일

* 별도 3개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제공서비스별로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할 것
 ① 사업 개요 ② 사업추진계획 ③ 매출 계획 ④ 투자 계획 ⑤ 손익 계획 ⑥ 인력수급 계획 ⑦ 요금 계획

-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·설치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

※ 제공서비스별로 세부내용을 작성하되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할 것
 ① 총괄표(주요설비, 설치장소) ② 통신망 구성도(호 흐름도) ③ 시스템 구성도 ④ 주요설비 세부내역 ⑤ 설치장소
 * 통신망구성도는 국내망의 경우 사업자의 지역별 교환기를 중심으로 공중망, 해외망, 그리고 고객 PBX 접속현황을, 해외망의 경우 해외지사, 외국사업자 망접속을 중심으로 작성할 것
 * 호 흐름도는 시내전화, 시외전화, 국제전화에 대해 이용구간을 중심으로 작성할 것
 * 국내통신사업의 경우 주요설비 내역에 PBX번호계획 추가

○ 이용약관, 이용자보호기구의 설치현황 및 운영계획서

※ 이용약관은 관련서비스별로 한국통신, 온세통신 이용약관 등을 참조하여 다음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할 것

① 총칙 ② 이용 계약 ③ 서비스 이용 ④ 서비스 이용정지 ⑤ 요금 ⑥ 이용자 보호 ⑦ 부칙 등을 중심으로 작성

* 특히 이용자보호와 관련하여 설비보유재판매 사업의 경우 이용자보호위원회의 설치, 이용자정보 보호 대책, 이용자의 불만처리 및 대책, 보증보험의 가입, 손해배상등이 구내통신사업 경우 상기내용의 자유로운 통화보장등이 추가로 포함되어야함

※ 이용자보호기구의 설치현황 및 운영계획서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할 것

① 목적 ② 이용자보호위원회 조직도 ③ 이용자보호대책 ④ 이용자보호위원회 운용현황

처리절차

- 접수기관 : 정보통신부 통신업무과
- 등록증 교부
 - 정보통신부 장관은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,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교부해야 함

기타사항

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에 관한 특례

○ 국제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승인

-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의 제공(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)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국내의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(법 제59조제2항)
- 국제 전기통신역무중 정보통신부 장관이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은 국제전기통신역무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,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에 관한 사항임(시행령 제19조)

○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에 관한 특례

-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 이용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중 전기통신망에 접속하는 전화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해야만 당해 역무제공이 가능함

○ 전기통신회선설비 제공

-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역무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 규정된 이용약관 적용(법 제29조5항)